

## 환경부공고 제2022-657호

「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의무량 감경 절차 등에 관한 고시」(안)을 제정함에 있어,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11월 23일

환 경 부 장 관

###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의무량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안 행정예고

#### 1. 제정이유

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개정(대통령령 제32148호, 2021.11.23., 일부개정)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감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

#### 2. 주요내용

가. 재활용의무량 감경 대상의 명확화(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신설)

재활용의무생산자가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제품·포장재를 제조·수입하거나 판매하고 그 실적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적용

나. 재활용의무량 감경 절차 등 구체화(안 제4조, 안 제5조 신설)

재활용원료의 사용실적에 대한 인정 범위와 재활용의무량 감경량의

산정에 대한 방법을 구체화

### 3. 의견제출

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2년 12월 12일까지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환경부 자원재활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반대시 사유 명시)

나. 성명(법인·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그 밖의 참고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우 편 :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, 3층 환경부 자원재활용과
- e-mail : seong78@korea.kr
- 연락처 : 044-201-7381, 7389, 팩스 : 044-201-7394

### 4. 그 밖의 사항

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e.go.kr>, 법령 → 행정예고란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